

문서번호	노동정책담당관-3784	시 민			
결재일자	2019.3.27.	주무관	노동정책팀장	노동정책담당관	노동민생정책관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			
방침번호					

‘근로’를 ‘노동’으로 행정용어 개선계획

2018. 3.

노동민생정책관
(노동정책담당관)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‘■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정책의 제형성	<p>◆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현황자료(통계자료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	<p>◆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</p> <p>-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 -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, TF운영, 타당성 검토조사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책수립	<p>◆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-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	<p>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?</p> <p>-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-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-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 - (안전)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 - (온실가스 감축)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,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책집행	<p>◆ 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)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 - (자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·인사·재정 부담 및 적정성, 파급효과 분석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	<p>◆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정책홍보	<p>◆ 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</p> <p>-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 -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·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</p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기타사항	<p>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?</p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	<p>◆ 공개 여부를 “비공개”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</p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
‘근로’를 ‘노동’으로 행정용어 개선계획

노동의 가치,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조례상의 용어 중 ‘근로’가 ‘노동’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자 함

I

추진배경

- “노동”의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시 기초
 - “노동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,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 한다”
 - ‘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’ 발표시(‘17.7.17.)
- 조례상 ‘근로(勤勞)’라는 용어를 ‘노동(勞動)’으로 일괄 변경·공포
 -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동의 가치,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‘근로’라는 용어를 ‘노동’으로 변경하는 조례 일괄개정안 공포 예정(‘19.3.28.)

〈 ‘근로(勤勞)’와 ‘노동(勞動)’의 개념 〉

【 표준국어대사전 】

- ▶ “근로”는 ‘부지런히 일함’을 의미, “근로자”는 ‘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’으로 정의
- ▶ “노동”은 ‘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’, “노동자”는 ‘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’을 뜻함

【 내포된 의미 】

- ▶ “근로”는 ‘사용자에게 종속이나 예속되어 일함’, “근로자”는 ‘근면하고 성실하게 기업을 위해 순종적으로 일하는 사람’의 의미
- ▶ “노동”은 ‘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’는 개념, “노동자”는 ‘자신의 일에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사람’의 의미

II

추진계획

□ 노동 관련 시설물 정비

- 노동복지시설 현황(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)

기 존	변 경
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	서울특별시 노동 자복지관
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	서울특별시 강북 노동 자복지관
서울노동권익센터	좌 동
전태일 노동복합시설	좌 동

※ 자치구 조례로 운영중인 근로자복지센터(성동, 서대문, 구로)에 대해서는 ‘노동자 종합지원센터’로 명칭 변경 권고

- 주요 정비 내용 : 시설물 간판 및 내부사인물 용어 정리, 공문서 작성 시 ‘노동’으로 변경하여 시행

※ 간판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민간위탁사업비, 민간위탁금 중 집행잔액 활용



〈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〉



〈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〉

□ 노동 관련 규정 정비

- 대상규정

-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→ 서울특별시 기간제**노동**자 관리규정

- 주요 정비 내용 : 규정 명칭 및 내용, 서식 중 ‘근로’ 용어를 ‘노동’으로 정비

※ 규정 개정 전이라도 “기간제노동자” 등 ‘노동’ 용어 사용하도록 권고

- 추진일정(안)

- 방침수립(‘19.3월) → 행정예고/규제심사 의뢰(‘19.4월) → 행정예고(20일간, ‘19.4~5월) → 법제심사(‘19.5월) → 결과반영 확정방침 수립 및 시행(‘19.6월)

노동 관련 위원회 정비

- 노동정책담당관 소관 위원회 현황

위원회명		근거조례
기존	변경	
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	노동 자권익보호위원회	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
노사민정협의회	좌 동	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
생활임금위원회	좌 동	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
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	좌 동	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

- 주요 정비 내용 : 변경된 위원회명으로 운영(임기 만료 후 재위촉 및 신규 위촉시 변경된 위원회명 필수 적용)

노동 관련 홈페이지 정비

- 노동정책담당관 소관 홈페이지 현황

홈페이지명	운영주체
서울시 홈페이지(경제-노동정책 분야)	노동정책담당관
서울노동권익센터	민간위탁기관
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	민간위탁기관
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	민간위탁기관

- 주요 정비 내용 : 홈페이지 운영주체별로 홈페이지 내 ‘근로’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자체 점검 후 ‘노동’으로 용어 변경 추진

Ⅲ 행정사항

- 노동복지시설 간판 및 내부사인물 교체 : 위탁운영기관
- 홈페이지 ‘근로’ 용어 점검 및 정비 : 홈페이지 운영주체
- ‘근로’ 용어의 ‘노동’ 변경 사용 : 전 부서
- ※ 총53개의 서울특별시 조례상의 “근로”용어를 “노동”으로 일괄 변경(법무담당관)